##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임이자·김종양·정희용

박충권 · 김형동 · 최수진

김소희 • 이철규 • 구자근

유용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 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저공해운 행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및 관 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 대상 차량, 지정·변경·해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제4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⑤ 제29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

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제49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
	<u>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u>
	<u>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u>
	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공해운행
	지역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u>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u>
	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
	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
	•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
	<u>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u> <u>한다.</u>
	<u> </u>
	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
	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
	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
	 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I	I I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자 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는 제1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 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 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 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수 있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저공 해운행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49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 대상 차량, 지정·변경·해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4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9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 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제5항에 따른 과태</u>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
<u>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u>
다